『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그린하이브리드)』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7조의 4** **(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7조의 4** **(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11) 일부개정안 반영
제3장 카드의 이용 **제11조(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④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카드사 또는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신 설>** 2. ~ 3. (생 략) ⑤ (생 략)	**제3장 카드의 이용** **제11조(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④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금소법 제20조 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관련 문구 정비

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우편 또는 팩스에 따른 서신전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그 밖에 상대방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4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생 략) ⑦ ~ ⑫ (생 략)	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4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현행과 같음) ⑦ ~ ⑫ (현행과 같음)	- 금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감독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부가 서비스 변경 관련 통지 방법 문구 정비
<신 설>	**제11조의3(카드 이용내역 표시)** 카드사는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단, 결제대행업체의 전산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	- 권익위·금융위의 카드 결제내역 표시 방식 개선 제안사항 ('21.3월) 반영
제4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 ① 회원은 제34조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생 략)	**제4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 ①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현행과 같음)	- 제34조 삭제에 따른 근거 변경 - 현행 제34조는 약관 내 조항을 의미, 개정안의 제46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의미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34조 (청약의 철회) 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삭 제 >**	- 금소법 제46조 (청약의철회)의 대상 상품에서 신용카드 제외 반영
제35조(위법계약의 해지) (생 략)	**제34조(위법계약의 해지)** (현행과 같음)	- 조 번호 올림
제36조 (변경승인 등) (생 략)	**제35조 (변경승인 등)** (현행과 같음)	- 조 번호 올림
제37조 (경과 조치) ① ~ ③ (생 략) ④ 제36조 제5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⑥ ~ ⑨ (생 략) **<신 설>** <신 설>	**제36조 (경과 조치)**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제35조 제5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전자문서' 추가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⑫ 제11조의3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 조 번호 올림에 따른 변경 - 휴면신용카드 관련 고지수단 변경사항의 적용일자 표기 - 카드 결제내역 표시개선 적용 일자 표기
제38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생략)	**제37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현행과 같음)	- 조 번호 올림
제39조 (관할법원) (생략)	**제38조 (관할법원)** (현행과 같음)	- 조 번호 올림